

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

의안번호	289
의 결 년 월 일	94. 8. 1 (제30회)

제의년월일 : 1994. 8. 1

제 의 자 : 부 의 장

소 속	성 명	주 소	생년월일	비 고
부천시의회	오강열	오정구 고강동 77-3	49. 7. 6	
공인회계사	김선구	원미구 춘의동 206-4	63. 5. 4	
시장추천	남상용	소사소 송내동 340 우성A 7-709	38. 12. 18	

부천도시계획(용도지역, 시설)변경결정안심사보고

☐ 심사결과

1. 심사일정

- 가. 제 안 자 : 부천시장
 나. 회부일자 : '94. 7. 29
 다. 상정일자 : '94. 8. 1
 라. 의결일자 : '94. 8. 1

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설명자 : 도시계획국장
 나. 내 용

—원미구 약대동 137-21번지 일원(28,790㎡)은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공원조성이 불가능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공원 일부폐지와 함께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

—소사구 밤막동 44-4번지(323,270㎡)일원 불량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연녹지 지역

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

-오정구 삼정동 12-15번지(37,400㎡)인대에 축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생산자와 소비자
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축산물 공판장 신설을 할 수 있도록 생산 녹지지역에서 자연녹
지 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사안임.

3. 집의답변 요지 : 생략

4. 의견 채택요지 : 별 첨

☐ 심사결과 : 의견서 채택

의 건 서

제 목	부천시 도시계획(용도지역, 시설)변경결정안
○ 내 용 － 부천시 도시계획(용도지역)변경 결정사항 중 범박동 44-4번지 일대 323,270㎡를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함에 있어 소사동 281-4번지 외 1필지 18,369㎡를 포함한 341,639㎡로 변경하는 것으로 고려함이 타당함. ○ 사 유 소사동 281-4, 소사동 297-4번지 2필지 18,369㎡는 범박동 44-4번지 일대와 인접한 토지로서 생활권, 주민정서 및 소유권이 동일한 특수지역으로 상기 지역만 제외 시 집단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금회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포함함이 타당함.	

부천도시계획(용도지역, 시설)변경결정(안)

의안번호	288
의결 년월일	94. 8. 1 (제30회)

제출년월일 : 1994. 7. 29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도시계획 제정비 단계에서 관련법령 개정 및 일부 지치된 사항을 보완 수정, 도시계획변경(안)을 수립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원미구 약대동 137-21번지 일원(28,790㎡)은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공원조성이 불가능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공원 일부폐지와 함께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
- 소사구 범박동 44-4번지(323,270㎡)일원 불량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
- 오정구 삼정동 12-15번지(37,400㎡)일대에 축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축산물공판장 신설을 할 수 있도록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

□ 관련근거

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,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및 제4호,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5호

부천도시계획(용도지역, 시설)변경결정(안)

□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 적(㎡)		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
합 계		52,180,000	—	52,180,000	
주 거 지 역	소 계	17,449,558.7	352,060	17,801,648.7	
	일반주거	17,110,285.7	352,060	17,462,345.7	
농 지 지 역	소 계	27,583,278.3	감 352,060	27,231,218.3	
	생산녹지	4,209,477.1	감 37,400	4,172,077.1	
	자연녹지	23,373,801.2	감 314,660	23,059,141.2	

※ 용도지역 변경사유서

번호	위 치	용 도 지 역		면적(㎡)	비 고
		기 정	변 경		
1	약대동 137-2 번지 일대	자연녹지	일반주거	28,790	신흥가로공원 일부매지에 따라 인 접용도 지역으로 변경
2	범박동 44-4 번지 일대	자연녹지	일반주거	323,270	범박동 일원 불량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
3	삼정동 12-15 번지 일대	생산녹지	자연녹지	37,400	농축산물 공판장신설에 따라 생산 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 변경

□ 시설결정(변경)조서

○ 공원결정(변경)조서

공원명	공원의구분	위 치	면 적 (㎡)			비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신흥가로	근린공원	약대·내·도당동·일부	40.590	감 27,670	12,920	

※ 변경사유:약대동 구간은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공원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원에서 일부 폐지를 하고자 함.

○ 도살장결정(변경)조서

시설명	세무시설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도살장	도 축 장	삼정동 12-15번지 일원	16.568	감 16,568	폐 지	

※ 변경사유: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 확대 불가능으로 도살장을 설치할 수 없이 폐지하고자 함.

○ 시장 결정(변경)조서

시설명	세무시설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시 장	축산물공판장	삼정동 12-15번지 일원	—	증 37,400	37,400	

※ 신설사유:축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당한 가격을 유지하므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축산물 공판장을 신설하고자 함.